『하나 Living Trust』 유언대용신탁계약서

※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하나 Living Trust』유언대용신탁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제3조	**신탁재산**	<별지1> 신탁재산의 목록 및 신탁재산별 개별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제5조	**신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7조	**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이 계약의 수익자는 <별지2>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에 따른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추가약정 및 특약**	상기 계약 내용 이외 특약사항을 추가하신 경우 <별지2>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내용에 대해 귀행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동 약관 및 계약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서명)

이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 인(서명)
대리인	주소: 주민번호: 성명: 인(서명)
수탁자	주 소 : 법인등기번호 : 성 명 : (인)

『하나 Living Trust』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함)과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나 Living Trust』 유언대용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의의와 목적)

① 이 계약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하여 금전,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해 위탁자 사후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가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이다.

② 이 계약은 위탁자의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재산분배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전수익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에서 위탁자를 생전수익자로 한다.
5. “사후수익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를 말한다. 사후수익자의 사망 또는 수익권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후n차수익자"로 표시한다.
6.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연속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 “연속n차수익자”로 표시한다
7.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위탁자나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8. “신탁관리인”이라 함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를 대신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는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를 통칭하여 “수익자”로 기술하고, 위탁자의 사망 이전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의미를 생전수익자로 해석하며,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를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한다.

③ 이 계약에서는 사후n차수익자와 연속수익자(연속n차수익자 포함, 이하 같음)를 통칭하여 “사후수익자”로 기술하고, 사후n차수익자와 연속수익자를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한다.

제3조 (신탁재산)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별지 1> 신탁재산 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023.11.06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약관-080호(2023.06.01)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8.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탁재산

②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중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용하는 "신탁계약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4조 (신탁재산에 관한 개별 계약 및 효력의 순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3조 제1항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과 제1항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5조 (신탁계약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에 의한 추가 신탁재산도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사망의 통지)

①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을 지정할 수 있고, 사망통지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탁자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사망통지인을 겸한다.

②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신탁관리인 또는 제3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대리인, 상속인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그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이 사망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사망통지인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① 이 계약의 수익자는 <별지2>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동일 차수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신탁원본 및

이익은 별도의 각 수익자 별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수를 구분하여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 사망시에 생존해있는 사후수익자들 중 선순위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 선순위자가 수익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생존하는 다음 순위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후에 사망하는 경우, 수익권은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위탁자 사망 시에 생존하는 사후수익자가 없거나, 생존하는 사후수익자 전원이 수익권을 포기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자가 없는 경우, 신탁계약은 종료하고 최후 순서로 지정된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잔여 신탁재산을 지급하기로 한다.

⑤ 동일 차수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탁자 사망시에 그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한 자의 수익권은 그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위탁자는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이 계약 제11조의 대리인, 상속인은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수익자연속신탁)

① 사후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후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그 수익자가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속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이익 지급방법)

신탁이익의 지급방법은 제4조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내역 통보)

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내역 통보는 제4조에 따라 체결한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개별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해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종전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자의 대리인)

① 위탁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본인을 대리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이 계약에 관하여 이 계약 및 신탁법상 위탁자가 가지는 권리와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 단, 제7조 제6항의 '수익자 지정, 변경권'과 제18조 제1항의 '신탁계약 해지권'은 제외된다.

③ 위탁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2> 특약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추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변경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대리인이 될 자의 선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의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관리인 지정 및 권한)

① 위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신탁관리인은 이 계약 및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자기의 명의로 할 권한을 가진다.

③ 신탁관리인의 보수는 무상으로 한다. 단, 특약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신탁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2> 특약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추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변경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탁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신탁관리인이 될 자의 선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관리인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여럿의 신탁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신탁관리인의 임무는 신탁법 제67조 제2항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신탁법 제69조 제2항의 종료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된다. 신탁관리인은 임무의 개시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신탁원본과 이익의 보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익의 귀속)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 (신탁재산의 표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제4조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체결에 따른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 연장, 수익자 변경, 신탁재산 추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 조건 변경 시에도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정해진 신탁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미지급된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고(이 경우 사후수익자의 신탁재산 귀속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위 충당을 위하여 신탁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작성 없이 신탁보수를 출금 처리할 수 있다(무통장, 무인감 출금). 신탁재산에서 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익자 또는 상속인 등 신탁재산을 귀속받을 권리자는 미지급된 신탁보수를 완납하여야 신탁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2023.11.06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약관-080호(2023.06.01)

제17조 (조세 및 비용)

이 계약의 체결, 집행, 기타 신탁사무 처리(소송 등 포함)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조세 및 제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 등)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신탁원본 및 이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중도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6개월)미만 경과 시 : 신탁원본의 (1.0)%
- 신탁계약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 시 : (없음)

④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제16조에서 정한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상당한 기간 최고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이 계약 및 개별 신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탁자의 나이, 건강,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계약 체결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에서 발급한 정신감정서, 소견서 등)를 징구 할 수 있다.

⑥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는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신탁계약 종료 및 최종계산)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8조에 의해 신탁계약의 전부가 해지되는 경우
3. 이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4. 이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5.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 중병치료, 학업 등을 계속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고, 수익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를 신청한 경우
6. 수탁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제3호 및 제4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8. 기타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계약 또는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권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익권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19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에 따른 신탁재산은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이때 수탁자는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제출한 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사후수익자는 제19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해 주어야 하고, 위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④ 제19조에 따라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되었으나, 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권리자 확정 이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보관·관리 할 수 있다.

⑤ 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권리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통지 및 수속 의무)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또는 거래인감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제11조의 대리인, 신탁관리인 등 신탁계약 관계자의 사망, 성명·상호·주소지·행위능력 등의 변동이 있을 때 또는 법정대리인·제11조의 대리인·신탁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이 있을 때
3.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4. 제3자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 중 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 허위나 부실 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3조 (인감 신고)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인감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에 관한 수령증, 통지서, 기타 제반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는 등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이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인감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이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추가약정 및 특약)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한 당사자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이 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추가약정(별지 서식)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추가 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의 특약은 <별지2>와 같다.

제25조 (관련 규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이 계약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 관련 법규 및 민법에 따른다.

제26조 (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위탁자(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탁계약서(이하 이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 수탁자는 이 계약 및 개별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인 경우
2.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제3자와의 채무관계 면탈 또는 소송, 목적으로 밝혀진 경우
3.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의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제29조 (수탁자의 면책)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허위 사실 기재 등 기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와 연락처 등 수탁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 내용 및 개별 신탁계약의 신탁재산과 관련된 분쟁 또는 법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유지를 위해 분쟁 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분쟁 또는 법률적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신탁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신탁계약의 불이행 및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수익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탁재산의 일부를 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중도해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⑥ 수탁자는 제21조 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한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소송수행 등)

① 신탁재산 또는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사후수익자는 위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수탁자는 사후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교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31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계약서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며, 위탁자가 생전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

계약서 사본을 생전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2023.11.06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약관-080호(2023.06.01)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하나은행)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이승열

지배인 지점장 (인)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23.11.06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약관-080호(2023.06.01)

<별지 1>

신탁재산의 목록

2023.11.06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약관-080호(2023.06.01)

<별지 2>

특 약 사 항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24조 (추가 약정 및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특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특약의 효력이 이 계약에 우선한다.

제1조 (생전 및 사후수익자의 지정)

제2조 (신탁보수)

2023.11.06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약관-080호(2023.06.01)